

## 2. 대학평의원회규정

제정일:2007.2.2

개정일:2008.1.25.

개정일:2012.7.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78조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2008.1.25 >

###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3명
2. 직원 - 3명
3. 학생 - 1명
4. 동문 -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② 교원 평의원은 5년이상, 직원 평의원은 2년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제4조(위촉)**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4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법인정관 제 20조5항에 의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2.7. 4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

2.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에서 추천한 자 3인 <개정 2012.7.4 >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조신설 2008.1.25 >

④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조신설 2008.1.25 >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25 >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개방감사 추천)**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감사1인에 대하여 단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 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8 년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2 년7월 4일부터 시행한다.